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

1. 사회복지과-2508(2015.1.20)호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-5676(2015.10.7)호와 관련입니다.

2.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복지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가. 교부대상 : 강남장애인복지관외 4개소

나. 교부금액 : 금556,585,180원(금오억오천육백오십팔만오천일백팔십원)

다. 재원비율 : 시비90%, 구비10%

(단위:원)

복지관명	2015년 예산액	기 교부액	12월 교부액			잔액
			계	시비	구비	
총계	7,913,460,000	7,333,028,630	556,585,180	500,926,650	55,658,530	23,846,190
강남장애인복지관	1,267,560,000	1,161,962,000	105,598,000	95,038,200	10,559,800	0
성모자애복지관	1,705,445,000	1,655,228,000	50,217,000	45,195,300	5,021,700	0
청음회관	1,549,445,000	1,389,635,090	135,963,720	122,367,340	13,596,380	23,846,190
충현복지관	1,796,075,000	1,689,871,000	106,204,000	95,583,600	10,620,400	0
하상장애인복지관	1,594,935,000	1,436,332,540	158,602,460	142,742,210	15,860,250	0

라. 지원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,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

마. 교부방법 : 장애인복지관 교부신청에 의해 계좌 입금조치

바. 정산방법 : 매월 사업 종료후 매분기후 집행예산 정산

사. 교부조건 : 2015년 보조금은 반드시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편성하며 인건비 전용은 불가, 인건비 잔액발생 시 정산 후 반납.

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,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.

아. 예산과목 : 사회복지과,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복지시설운영, 장애인복지관운영, 민간이전, 민간위탁금

